예 산 총 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52,542,000	16,576,260
일반회계	546,150,000	16,384,500
특별회계	6,392,000	191,760
기타특별회계	6,392,000	191,76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6,800	804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643,539	19,306
수질개선특별회계	982,998	29,49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06,220	3,187
주차장특별회계	4,632,443	138,97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90,82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21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조직변경조례(안)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·운용할 수 있다

※ 이전재원 표시
국비→국, 균형발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조정교부금→특, 지방소멸대응기금→대